

■ 政府 施策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마련 — 通産部, 43개 분야 · 550개 과제 선정 —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천년까지 총 2조 1400억 원을 투입, 43개 기술분야, 550개 기술과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이중 1조 1천억 원을 정부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술개발계획이 성공리에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는 오는 2천년에 세계 초일류 제품 및 기술 10개, 시장잠재력 전략제품 및 기술 40개, 유망제품 및 기술 500개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안)’을 마련, 관련연구기관 및 업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이달 중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은 그동안의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91~95년)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기술개발 획득사업과 기술기반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내년부터 기술개발 획득사업은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으로, 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 인프라계획으로 각각 나뉘어져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마련된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 과제도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이 제조기술 중심이었다면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산업기술을 망라하게 된다.

특히 시장성에 입각한 철저한 수요중심적 기술개발을 추구한다는 전략아래 그동안 43개 분야별 기술교류회를 통해 694개 주요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43개 분야, 550개 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술개발 지원방식도 WTO등 국제규범에 맞춰 간접지원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550개 기술과제를 기술속성별로 △경쟁전략기술 △공통애로기술 △공공기술로 구분, 경쟁전략기술은 민간주도로 개발을 추진하고 지원도 간접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계획이 성공리에 완료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부문별 기술수준은 기반기술이 현재 선진국대비 45% 수준에서 2천년에는 65%로 높아지고 자본재는 48%에서 70%로, 기계류는 52%에서 70%로, 전기·전자부문은 51%에서 70%로, 컴퓨터·정보통신부문은 34%에서 65%로, 화학부문은 48%에서 70%로, 생활·섬유부문은 58%에서 75%로 각각 향상될 전망이다.

■ 産業技術개발 5개년 계획 연도별 지원 계획(중전기기 분야)

-1차년도 (1996)

- 전력관리 제어 시스템
- 대용량 전원장치

-2차년도 (1997)

- 특수전동기
- 전원변환장치

-3차년도 (1998)

- 유도가열장치
- 전기용접기술

-4차년도 (1999)

- 절연재료
- 연료전지용 전력변환 시스템

-5차년도 (2000)

- 차단기
- 고압 대용량 SMPS
- 소형 발전기

내년 産業支援예산안 修正

– 산업기술 5227억 中企창업·진흥 6320억원등 –

정부의 산업지원기금 및 자금개편 계획에 따라 국회에 상정될 96년 예산안이 크게 조정됐다.

재정경제원 및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 산업합리화 및 수출보험지원 등을 위해 통산부가 운영하고 있는 11개의 기금 및 자금을 기능별로 5개 기금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에 따라 11개 기금별로 마련했던 예산안을 재조정했다.

재조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통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지원관련 기금(자금)은 크게 △산업기술자금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5개로 통합된다.

이중 산업기술자금은 기존의 예산안에서 반영됐던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359억원,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2323억원, 공업발전기금 중 시제품·첨단기술개발자금 2545억원 등 기술개발자금 및 기금을 뛰어 총 5227억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5227억원은 정부출연, 2545억원(시제품·첨단기술개발자금)은 재특융자 형태로 지원된다.

산업기반자금은 기존의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2638억원을 중심으로 유통합리화자금(현행 유통근대화재정자금) 434억원, 공업발전기금 중 생산성향상·환경분야지원액 100억원이 포함돼 총 3172억원이 정부예산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금 등이 통합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내년도 지원액은 6320억원이다.

이같은 지원액은 올해의 지원규모 4705억원에 비해 161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50%씩을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액이 올해 2500억원에서 내년에 4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기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및 수출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기금은 지금처럼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되며 내년 예산지원규모는 각각 400억원 및 1400억원으로 금년대비 200억원 및 400억원이 증액됐다. 통산부는 이들 산업지원기금 및 자금에 대한 예산지원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새해 이들 기금의 운영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통산부는 기금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원대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기금은 공통애로기술개발, 중소기업거점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개발, 중소기업기술지원(현재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 시제품 및 첨단산업기술개발(공발기금), 기술인력 및 연구시설(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등의 용도에 지원된다.

또 산업기반자금은 생산성향상, 염색공단폐수처리(공발기금), 중소기업설비투자·기술개발·환경설비(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및 유통업체 지원(유통합리화자금) 등에 지원된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역시 자동화·협동화·창업보육사업·정보화기반조성(중소기업진흥기금),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지방중소기업육성등을 위해 충당되나 지원절차및 지원조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업지원기금및 자금의 통폐합에 따라 자금지원체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를 높여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유사자금의 중복지원의 소지를 없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금운영을 경기흐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호황기에는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불황기에는 구조조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산업지원용 기금·자금 예산안 수정내용

현행(11개)			개편안(5개)	
기금·자금명	95년	96년예산	기금·자금명	96년예산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202	359	산업기술자금	5,227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3,811	2,323		-출연:2,682
공업발전기금 -시제품·첨단기술개발	1,665	2,645 (2,545)		-용자:2,545
-생산성향상·환경부문 유통합리화자금		(100)	산업기반자금	3,172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	277	434		
3,260	2,638			
중소기업진흥기금	1,305	1,45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320
중소기업창원지원기금	100	170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4,000		
농공단지입주기업자금	800	700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200	400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400
수출보험기금	1,000	1,400	수출보험기금	1,400

中企자동화 支援要件 완화 – 通産部, 공장등록증보유업체 工團이전 支援 –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증 보유업체의 이전 예정공장에 대한 자동화자금 지원 시청자격이 인정된다. 또 공장등록증 보유업체가 공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예정공장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신청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중소기업 자동화사업 업체 선정 및 추천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 운영)을 승인하고 이달부터 이들업체의 자동화자금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승인된 업체선정 및 추천요령에 따르면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증 보유업체는 이전 예정공장에 대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또는 승인을 받고 건축법에 의한 공장건축허가를 얻은 경우 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공장등록증 보유업체가 공업단지로 이전할 경우에도 이전 예정공장이 이같은 조건을 갖출 경우 신청자격이 인정된다.

지금까지 공장등록증 보유업체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만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들 업체가 시외곽 등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예정공장이 공장등록증을 보유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에 걸쳐 1만700개 정도의 이전조건부 공장이 이전을 추진중이나 공장이전에 따른 시설 및 운영자금 부담으로 이전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고 성장유망기업이 이전 후에 노후시설의 개체가 자연돼 새로운 입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통산부는 9월 자동화자금에 대한 신청이 당초 배정예정액 700억원의 두배가 넘는 1724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9월분 배정액을 1082억원으로 늘려 대출을 추천하기로 했다.

CALS의 國家標準化 본격 推進 – 공진청, CALS 전문위원회등 신설 –

80년대 옛소련과 군비경쟁을 벌이던 미국이 체계적인 군수지원과 관리를 위해 개발한 군수사업 전반의 정보화프로그램인 CALS(Computer-aided Acquisition and Logistics Support)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확산되어 전 산업부문에 있어서 『신경영 전략』으로 발전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도 도입됨에 따라 공업진흥청에서는 CALS의 실현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CALS의 도입으로 제품의 설계, 제조공정, 자료의 이송 및 보관, 출판에 이르기까지 전산화하므로서 시간의 절약은 물론 원가를 줄이는 혁신적인 운영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업계에서도 CALS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95년을 『CALS 도입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공업진흥청에서는 이러한 산업계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내 CALS의 도입 확산에 필요한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CALS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ISO(국제표준화기구) 및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해당 기술위원회(TC / SC)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IEC / TC86 (광섬유)에 가입을 추진하고, 현재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ISO / IEC JTCI / SC25(정보기기의 상호접속)에 대해 정회원으로 가입하며, CALS표준과 관련되는 국제표준화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96년도의 국제표준화회의 중 IEC / TC52(인쇄회로기판), JTCI / SC30 (Open-EDI), ISO / TC211(지리정보)회의를 국내에 유치키로 하였다.

또한 ISO, IEC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CALS관련 국제표준 등 CALS의 국내정책에 필요한 표준을 KS 규격으로의 제정을 확대하기 위해 CALS관련 단체표준 및 KS 규격을 심의하게 될 『CALS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보 및 문서의 작성, 산업자동화시스템, 공정제어 및 설계자동화 부문에서 KS규격을 집중적으로 제정해 갈 계획이며, CALS관련 표준의 효과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전문기관에 CALS의 실태조사도 실시 할 방침이다. CALS관련 기존의 KS규격 보유현황과 향후 제정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 CALS관련 기존의 KS규격 보유 현황

분 야 별	규 격 명
-정보 및 문서작성	-KS C 5631(광학식문자인식을 위한 인자사양)등 7종
-은행업무 및 재무서비스	-KS C 5948(금융업과 관련 금융서비스의 매세지 인증요건)등 7종
-행정, 상업및 공업용 문서교환 (EDI)	-KS C 5863(전자문서 구문규칙)
-산업자동화 시스템	-KS C 5928(무역문서상의 코드위치)
-문자코드 및 데이터요소	-KS B 7086(산업용 로봇의 프로그램언어)등 17종
-정보통신 및 OSI	-KS C 5601(정보교환용 한글한자)등 56종
-문서처리	-KS C 5778(근거리통신망의 논리링크제어)등 42종
-프로그래밍 언어	-KS C 5914(SGML문서 교환형식)등 15종
-컴퓨터그래픽스	-KS C 5745(전자계산기 프로그램 및 언어 ADA)등 23종 -KS C 5910(컴퓨터그래픽스 메타파일에서의 한글처리)등 10종

-정보보안기술 -전자기기 및 통신부품 -광섬유 및 통신케이블	-KS C 5884(물리층에서의 데이터 암호화)등 7종 -KS C 6370(전자기기용 단소파막 고정저항기)등 30여종 -KS C 6932(석영계 다중모드 광섬유)등 61종
---	---

■ CALS관련 향후 KS규격 제정 분야

분 야 별	규 격 명
-정보 및 문서작성	-문서정보의 검색 및 회복을 위한 응용 프로토콜등 54종
-은행업무 및 재무 관련	-통화 및 자금 표현코드등 32종
-그래픽기술	-대화형 그래픽스등 47종
-행정, 상업및 공업용 문서 및 데이터 요소	-국제무역용 문서등 5종
-산업자동화시스템	-생산자동화프로그래밍언어등 42종
-시스템간의 정보통신	-OSI용 데이터링크 절차기술등 100여종
-문서처리 및 상호교환	-SGML문서 및 교환등 100여종
-통신용전자기기 및 부품	-무선통신 콘넥터등 100여종
-공정제어 및 설계자동화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등 48종

海外投資 자기자금義務比率 신설 - 財經院, 해외직접투자自由化 및 健實化방안 마련 -

1억달러 이하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전체 투자액의 10% 이상을, 1억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은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 17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된다. 외국환은행의 인증대상인 해외직접투자가 '30만달러 이하'에서 '1천만달러 이하'로 대폭 확대되고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대상인 해외직접투자는 '30만달러 초과~1천만달러 이하'에서 '1천만달러 초과~5천만달러 이하'로 조정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 업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다 대부분 외국환은행의 인증만 받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건설화 방안'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번 해외직접투자에 자기자금의 무조달비율을 신설한 것과 관련, 일부 기업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母기업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 현지의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10일이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자기자금 의무조달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국내 母기업의 지급보증을 총투자액의 50%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급보증은 투자로 간주, 초과분에 한해 자기자금 의무조달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전체한도를 국내 모기업의 자가자본 100%까지만 허용하고 타계열기업이나 은행등의 지급보증도 해당 모기업의 보증으로 간주, 한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만약 타계열기업과 공동으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자지분에 따른 자가자본이 가장 큰 기업을 모기업으로 간주키로 했다.

■ 海外投資節次 간소화내용

종 전	개 선
-30만달러이하 : 은행인증	-1천만달러이하 : 은행인증
-30~1천만달러 : 한은심사부신고	-1천만달러~5천만달러 : 한은심사부신고
-단 외국환은 · 수은 50%	· 동 일
자금지원시동행처리	
-1천만달러초과 : 한은허가및 해투심상정	-5천만달러초과 : 해투심심의, 한은허가
· 단 수은·산은 50%자금 지원시 동행처리	· 동 일